

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1. 6. .
제 출 자	구 미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납세 의식 향상과 세수 증대에 기여,
- 노상주차장에 대한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.

2. 주요 골자

-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 : 면제(제4조의2 제5호)
- 국·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(스티커) 부착 차량 : 1년간 면제(제4조의2 제6호)
- “노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”를 삭제(【별표1】 제2호)

3. 참고 사항

- 대통령 지시말씀('98. 4. 14)
- 다른 시 주차장 조례

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의2 중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 : 면제
- 6. 국·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 (스티커) 부착 차량 : 1년간 면제

【별표1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(현행과 같음) 1. ~ 4.(현행과 같음) 5. <u>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 : 면제</u> 6. <u>국세 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소유의 차량 중 성실 납세자증 표시(스티커)부착 차량 : 1년간 면제</u>

【별표 1】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현행							개정안
(단위:원)							(현행과 같음)
급지 구분	1회 주차요금 (1구획당 최초30분)	30분초과 매10분마다	1일 주차요금	월 정기주차요금			
				주 간	야간	주·야간	
1급지	400	200	5,000	50,000	40,000	60,000	
2급지	300	100	3,000	30,000	25,000	40,000	
3급지	200	100	2,500	25,000	20,000	30,000	
※ 비교 1. (생략) 2. <u>노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3. ~ 5.(생략)							1. (현행과 같음) 2. <삭제> 3.~ 5.(현행과 같음)